

## 본회, 농장검정 시행 요령 마련

본회 검정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검정위원회를 열고 농장검정 시행 요령을 마련, 8월부터 시행토록 했다.

검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농장검정 시행요령은 다음과 같다.

### 농장점검 시행 요령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농장검정은 농장자체종돈의 능력을 향사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농장자체 검정사업이나 종돈구입자에게 객관성 있는 검정성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한양돈협회 능력검정소가 (이하 검정소라 함) 성적의 기록, 분석, 보관, 전달 등의 검정사업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므로써 종돈개량에 기여코저 함으로 검정성적의 공정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

#### 제2조 (검정요건)

##### 1. 모돈 보유두수

농장검정을 실시할 농장은 순종생산을 위한 최소 모돈보유두수가 40두 이상 확보된 농장이어야 한다.

##### 2. 개시두수와 체중

개시두수는 암수 구별없이 20두 이상이어야 하며 체중은 20~30kg (25kg±5) 일때 개시한다.

##### 3. 종료두수와 체중

종료두수는 개시두수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체중은 75~105kg (90kg±15)일때 종료시킨다.

(단, 수의사의 진단서와 이표가 나타나는 사진등의 증명자료나 검정요원이 인정할 수 있는 두수는 예외로 한다.)

#### 제3조 (의 무)

1. 농장검정을 실시하는 농장은 생산되는 순종 수퇘지 자돈

의 5%이상은 농장검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1%이상은 검정소에 출품하여 종돈의 능력을 공인받아야 한다.

(축산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3)

2. 검정돈은 검정개시일에 혈통등록을 신청하고 종료일전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3. 검정요원에게 다음사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가. 종돈 보유두수 및 순종생산용 종돈두수와 검정사료성분 확인서(별첨 양식)

나. 소정의 검정회비는 검정개시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최근 6개월동안 오세스키질병과 돼지콜레라, 단독, 일본뇌염, 전염병 위장염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질병에 대한 3개월 내의 무발생 확인증사본과 예방접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합격율) 농장검정의 합격율은 선발의미가 있는 50% 이상으로 하며 합격돈에 한하여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 (등록취소) 농장검정 농장으로 등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농장검정을 실시하지 않는 농장은 등록을 취소한다.

제6조 (성적의 발표) 농장검정의 성적은 농장내의 개량이 목적이므로 검정소검정 성적의 발표에 의한 인식의 정착시까지 유보한다.

제7조 (검정규정) 본 시행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돼지검정규정 (농수산부 고시 제85-59호, 1985. 11. 18)에 준한다.

#### 부 칙

\* 본 시행요령은 1988. 8. 1일부터 시행한다.